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마목,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우정사업본부장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우편요금 감액대상

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로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1회에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집중국

3)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에는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나. 우편물 제출 방법

1)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3) 각 묶음에는 행선지역의 우편번호와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4) 우편물을 제출 시에는 우편물의 종류·우편물 수량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은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 사용을 의미함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

가)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련번호, 우편번호,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 [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구 분	우편집중국	기타 접수 우체국
접수신청서	서면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1만통 미만 : 서면 또는 파일(엑셀) 1만통 이상 : 파일(엑셀)

다.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1) 우편요금은 ①현금, ②우표, ③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④「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단,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A4용지(별표1)에 첩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기본감액률 : 일반 우편요금의 67%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4호는 폐지한다.

[별표1]

국내통상 감액우편물 우표 첩부

[별표2]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ㅇ 발 송 인 :

ㅇ 전화번호 :

ㅇ 우편물 접수내역

우편물종류	묶음 및 용기종류		우편번호 구분정도	통당중량 (g)	통당요금 (원)	통수합계 (통)
	종류	수량(개)				
합계						

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별표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일련번호	우편번호	우편물수(통)